

[표절 관련 디자인컨버전스학부 내규]

〈표절의 정의〉 다른 사람이 쓴 작품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의 개념적 의미에 근거한 디자인 표절은 즉, 작품에 적용된 디자인 또는 작품에 대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이를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1) 온라인 표절 -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콘텐츠 스크레이핑(피나르기) 과정에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 양 제시하는 것

(2) 자기표절 - 자신의 저작 또는 작품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혹은 완전히 똑같이 다시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중복게재, 중복출판)

〈표절 판단 기준〉 시각적(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외관상의 공통점 즉, 전체적인 디자인이 동일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를 통해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디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물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가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동일한 미감을 줄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1) 동일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다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2) 디자인의 요소가 물품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누가 창작하더라도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3)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의 변형 가능성이 적다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4) 디자인의 물품이 한정되어 이어 변화의 여지가 적다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오마주와 패러디〉 오마주- 존경하는 작가와 작품에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한 작품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창작하거나 원작 그대로 표현하는 것

패러디- 특정 작품의 매우 진지한 소재나 특정 작가의 고유한 문체를 흉내내어 저급한 주제에 적용하거나 희화하는 것으로 흔히 풍자와 위트, 아이러니를 내포

하며 작가가 전대 또는 당대의 신념에 대한 억압적 요소나 허위의식을 폭로하려 할 때 이용하는 수법

(*오마주와 패러디는 타인의 저작물을 차용한다는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표절과 유사하나 저작물과 관련된 인물을 제시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반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차이)

1.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재학생

가. 하나의 작품으로 2개 이상의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

- (1) 원칙: F학점 처리
- (2) 단, 각 수업 교수들의 협의에 따라 F학점 이외의 벌칙 부여를 제안할 경우 학부장이 디자인컨버전스학부 교과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경우, 자기작품(수상한 공모전 작품 등)을 표절한 경우

- (1) 원칙: 표절의 경중과 학생의 태도에 따라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함
- (2) 유기/무기정학 여부와 연한은 홍익대학교 상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함
- (3) 단, 지도교수가 유/무기정학 이외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학부장이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음
- (4) 학생 대표의 경우, 조형대학 학생회장 및 부회장,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회장 및 부학회장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학부장령에 따라 학생 대표자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생략 가능

(*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상벌위원회는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부장이 모집 및 선정함)

2. 디자인컨버전스학부 4학년 Design Convergence Studio(4),(5) 수강생

가. 졸업 작품 진행 시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경우

- (1) 원칙: 표절의 경중과 학생의 태도에 따라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퇴학에 처함
- (2) 표절 작품의 원작자, 브랜드, 기업 등 외부의 고발에 의해 표절이 밝혀질 경우 지도교수의 견해와 관계없이 홍익대학교 상벌위원회에 회부함
- (3) 유기/무기정학 여부와 연한은 홍익대학교 상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함
- (4) 단, 지도교수가 유/무기정학 이외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학부장이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음
- (5) 학생 대표의 경우, 조형대학 학생회장 및 부회장,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회장 및 부학회장 그리고 졸업전시준비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학부장령에 따라 학생 대표자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시 생략 가능

(*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상벌위원회는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부장이 모집 및 선정함)

나. 졸업 작품 진행 시 자신의 예전 작품을 표절한 경우(자기표절)

- (1) 원칙: 표절의 경중과 학생의 태도에 따라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퇴학에 처함
- (2) 유기/무기정학 여부와 연한은 홍익대학교 상벌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함

- (3) 단, 지도교수가 유/무기정학 이외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학부장이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상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상별위원회는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부장이 모집 및 선정함)

3. 디자인컨버전스학부 Design Convergence Studio(4),(5) 수강생 대상 협약서 작성

- (1) Design Convergence Studio(4),(5) 수강생들은 수강 전 표절 관련 협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함. 미작성 시 해당 과목 수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2) 작성 후 모든 형태의 표절이 밝혀질 경우 졸업전시 및 졸업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3) 작성 후 졸업전시 이후 또는 학기 종강 이후 표절이 밝혀질 경우 소급 적용하여 학점 부여 취소(졸업 취소)

4. 위의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시행함.

2021년 7월 26일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부

확 약 서

각서인 성명 :
전공 :
학번 :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

1. 각서인은 '표절 관련 디자인컨버전스학부 내규 사항' 을 숙지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 해당 내규 사항을 불이행할 시, 이에 따른 홍익대학교 법적 조치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_____(인)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부장